

20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설명회 질의회시 답변

2020. 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질의	답변
<p><공통></p> <p>○ 해당 평가의 이름은 수준평가로써, O, X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행의 정도, 다소 부족하더라도 노력하는 것을 보는 평가로 이해되는 상황이나, 특히 편람이 정성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계량적인 O, X 라는 이분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바, 기관의 전체적인 노력 정도를 보는 평가이기를 희망합니다.</p>	<p>○ 2019년 평가사항 중 지표에 대한 평가 방법 중 적부, 3등급, 5등급 평가방식을 2020년에는 5단계 척도(등급) 정성평가로 전체 개편하였음.</p> <p>(단, 사망사고 감소성과는 계량 평가)</p> <p>○ 또한, 각 지표별로 PDCA체제 내에서 계획-실행-평가-환류 등의 전반적 활동 수준을 평가함.</p>
<p><공통></p> <p>○ 세부평가항목의 내용은 현장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준비사항은 일반적인 설비의 레이아웃과 관련된 사항으로 명확한 점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현장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점검할 것인지 그리고 점검내용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전반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방대한 내용이 되므로 별도의 체크리스트 제공 필요)</p>	<p>○ 평가편람에서 관련 증빙 요구자료를 제시 하였으며, 설비의 레이아웃 등 평가 자료를 제시함에 어려움이 따르는 건은 가급적 준비를 지양하시기 바람. 단, 평가 위원이 별도 요청할 수 있음.</p> <p>○ '20년도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법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PDCA 과정의 절차를 아울러 평가하고 있어,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는 제공이 불가함.</p>
<p><공통></p> <p>○ 본평가지 본사 사옥(사무실)에 대한 C. 안전보건활동 평가는 제외를 요청 합니다. 현장작동성평가지 해당기관의 주요사업 작업장을 확인하였고, 본평가 시 주요사업이 아닌 단순한 사무공간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기관의 대표성이 결여되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p>	<p>○ 본사의 업무 및 작업, 이동동선 중에도 화재, 추락 등의 위험요소가 있어 '20년도 평가에서는 평가를 실시함. 다만, 사무공간에 대한 비중을 낮게 조정하고, 현장작동성평가와 본평가지 해당 C. 안전보건활동 영역은 현장작동성평가의 비중이 높게 반영됨.편람 참조)</p>

질의	답변
<p><공통></p> <p>○ 현장 작동성 평가 C 항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평가요소로 보여지나, 작년의 경우 KOSHA 운영지침의 내용을 평가로 반영한 사항 있습니다. KOHAS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없고, KOSHA 운영지침이 관련법령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OSHA 운영지침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귀 공단에서 공공기관용 KOSHA 인증체계를 새롭게 개발하여 도입하는 것도 업역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공공기관 역시 KOSHA라는 안전보건경영체계에서 운영되므로, 기관의 안전문화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p>	<p>○ 질문의 요지가 KOSHA-GUIDE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한 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됨.</p> <p>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시행령-시행규칙체제 아래, 기술적 기준을 풀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법령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등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p> <p>○ 또한, KOSHA-GUIDE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한 기술적 해설과 사업장(공공기관 포함)에서 법령에 따른 자체기준 수립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음.</p> <p>○ 아울러, 공공기관에 적합한 KOSHA-MS 인증체계 관련건은 관련 부서에 전달 협의 하겠음.</p>
<p><공통></p> <p>○ 현장작동성 평가의 대상 공지를 10일 전에 하지말고 최소 20일 전에는 공지 해주시기를, 만약 실질적인 현장상황 평가가 목적이라면 대상공지 없이 전일 오후 공지하여 다음날 평가 진행 요망</p>	<p>○ 현장 평가 일정은 사전공지(8월 첫주 예정)를 하며, 과도한 사전 준비 등에 따른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현장은 10일 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일부 공공기관의 현장은 보안구역으로 사전허가없이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으며, 피평가 기관의 자료 준비에 필요한 일정 등이 고려된 요소임.</p>

질의	답변
<p><공통></p> <p>○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대부분의 내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기준이 모두 포함되어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활동 수준평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 및 유지 평가를 하는 기관이므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수검하는 경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사후 심사 면제 해 주는 것이 어떠한지?</p>	<p>○ 안전활동 수준평가와 경영시스템 사후 심사는 일부 유사동일성은 있으나 측정하는 목적과 방법의 차이가 있어 현 단계에서 심사면제는 현실적 문제가 있음. 단, 향후 중장기적 측면에서 피평가 기관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가 체계를 고도화 하고 관련 의견을 소관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음.</p>
<p><공통></p> <p>○ 2020년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이 2019년 대비 많은 부분이 추가 되어 실제 현장작동성평가를 위해서는 동영상 설명회(편람을 읽어주는 수준으로 세부적 내용 이해불가)가 아닌 실제 설명회를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발굴이 필요</p>	<p>○ COVID-19로 인하여 불가피 동영상으로 설명회를 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신 사항은 유선 질의 바람.</p>
<p><공통></p> <p>○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본평가와 현장작동성평가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실제 본평가에서는 모든 항목을 평가하고 현장작동성평가는 B. 안전보건관리, C. 안전보건활동 항목평가를 시행함. 보통 공공기관들은 현장과 본사가 동일하게 운영되므로 평가시 B. 안전보건관리는 본평가에 포함하고 C. 안전보건활동 항목만 현장작동성평가를 시행하는 개선이 필요함. 그리고 C.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체크리스트 제공필요(체크리스트 제공할 경우 현장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됨)</p>	<p>○ B. 안전보건관리와 C. 안전보건활동은 현장의 업무 및 작업 내용 등을 바탕으로 안전활동의 실행력을 평가하고자 함에 중점을 두고 있어, 현장작동성 평가 및 본평가에서 해당분야는 공통적으로 평가됨. '20년도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법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PDCA 과정의 절차를 아울러 평가하고 있어, 단편적 평가방식의 체크리스트 점검표 제공은 현행 평가취지와 상충된 측면이 있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p>

질의	답변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람의 내용작성은 평가착안사항, 준비사항을 구분되어 있음. 수검받는 기관의 업무를 줄여주고 효율적 평가를 위해서는 준비사항을 명확히하고(두리뭉실하게 이런자료 등 형태의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준비서류만 명확히) 그 외에는 우수사례정도 준비하도록 내용 변화가 필요(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안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이해와 관련사항의 준비를 돕기 위해 착안사항과 준비사항, 참고자료 사항을 편람에 담고 있음. 공공기관의 평가 준비를 위한 절차 개선평가시스템 개발 등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음.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통한 '경영평가 - 안전과 환경' 실적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활동 수준평가'와 '중대재해 발생 적부'의 결과로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 평가자료 작성에 대한 스킬과 비전문 평가위원 대면 인터뷰 능력 요구하는 가시적 평가제도 도입 - 기관의 안전관리체제,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활동 추진 등의 실질적인 안전에 대한 평가제도 정립을 위해 평가제도의 변경 필요 *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에 부합한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경영평가 반영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사항이며, 적시하신 내용은 기획재정부에 기관 건의사항으로 전달 하겠음. ○ 평가위원은 안전관련 분야 교수, 안전 경력이 많은 고용부 및 안전공단 직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안전 강화 대책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활동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질의	답변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평가 결과는 단순 통보의 성격을 가지는지, 혹은 기관별 공통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당해년도 낮은 평가 등급을 받더라도 제도적 부분의 개선 등이 어려워 차년도 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과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각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임. ○ 귀 기관의 경우 정부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관계로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전등급제 심사자료에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기관은 전국 각 지방에 지사 및 지역 사업소가 다수 편제되어 있습니다. ○ 본심사 시 건강진단 결과표, 교육일지, 보호구 지급대장 등 세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기관 모든 사업장·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수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19년 평가 시 본사의 이행 증빙만 샘플링하여 심사되었는데 금년 본 평가시에는 기관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수 확인하실 것인지(그 양이 매우 방대할 것으로 사료됨) 아니면 본사 또는 특정 지사의 증빙 자료를 샘플링하여 준비·심사받으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진단 결과표는 사업장용 결과표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교육일지, 보호구 지급대장 등 세부 증빙은 샘플형식으로 준비하되, 관련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공공기관의 전체에 관한 사항은 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획 위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지사 등)에 대한 확인사항은 현장평가 시 샘플링 방식으로 확인 예정

질의	답변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관련 증빙자료를 내부전산망 분리 및 보안상의 이유로 별도의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 증빙만으로 가능한지? ○ 또한, 종이문서 출력 및 제본 미제공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은 없는지? (실제 인쇄물을 더 선호하시는 평가위원에 인쇄물 미제공시 평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지양이 아닌 전산 자료 제공만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요청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평가 기관의 편의제공을 위해 PC저장 자료로 증빙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으며, ○ 기관에서 업무적으로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형식은 제한하지 않음. ○ 전산자료로 요구한 것은 많은 양의 인쇄물을 별도의 책자로 편철, 제작하는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관련 증빙자료는 가급적 전산파일(hwp, pdf 등) 또는 내부 전산망 등의 on-line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공공기관 전산망은 보안강화에 따라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임 (외부 방문자 업무망 접속불가). 그런데 전산파일 또는 On-line형태는 불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평가 기관의 업무 부담 최소화편의 제고를 위해 on-line 증빙도 인정해 드리고 있으며, ○ 보안상의 문제로 전산파일 형태로 제공 불가능 하신 경우, 종이 인쇄물 등 기관이 제공 가능한 방식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 종이 인쇄물, 전자책, 태블릿 등 기관이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일하여 증빙.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과 건설현장은 B,C만 평가하고 A,D는 평가하지 않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D는 기관 전체 공통 해당항목으로 본평가 시 평가하고 현장작동성 평가시는 현장 활동에서 중요도가 높은 B,C만을 평가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질의	답변
<p><공통></p> <p>○ 소속된 기관이 안전관리중점기관이 아니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현장이 없다면 '현장작동성평가'는 제외하고, 21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본평가' 만으로 최종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	<p>○ 현장작동성평가의 대상은 편람(안)을 통하여 제공하였으며, 별도로 공문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p> <p>○ 현장작동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본평가의 결과만을 반영함.</p>
<p><공통></p> <p>○ 현장작동성 평가 시 방문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기관전체의 사항으로 평가하는지?</p>	<p>○ 방문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본사의 규정 및 안전기본계획, 관련지침 등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평가함.</p>
<p><공통></p> <p>○ 현장작동성평가 대상기관으로 사업장을 14개 운영중인데 그 중 몇개 사업장이 점검대상인가요?</p> <p>○ 만약 1개 사업장만 점검한다면 어떻게 기준으로 사업장을 선정하는 건가요? 또한 선정통보 기한은?</p>	<p>○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기관별로 1개의 현장이며(건설현장을 평가 받는 경우 최대 2개<직영 현장과 건설현장>), 기 실시한 실태조사와 안전보건공단의 DB, 각 기관별 홈페이지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현장에 대하여, 사고의 발생, 규모, 수급업체 여부, 위험기계기구 보유, 유해화학물질 사용 등의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별 위험도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였음.</p> <p>○ 평가일정은 8월 초 사전공지하며, 대상 현장은 방문 10일전 공문으로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p>
<p><공통></p> <p>○ 항만에 입주한 업체는 도급 및 수급의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것으로, 임차인이 직접 모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차인의 작업장도 평가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p>	<p>○ 임차인의 작업장은 평가 대상이 아니나, 항만공사의 자산에 포함되는 범주와 직영·수급 근로자의 업무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 됨 (단,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p>

질의	답변
<p>○ 평가 전 대상기관별 작업장을 명확히 선정·통보 할 예정인지 문의합니다.</p>	<p>사업장 또한 특성에 따라 반영될 수 있음) ○ 평가일정은 8월 초 사전공지하며, 대상현장은 방문 10일전 공문으로 알려드립니다.</p>
<p><공통> ○ 기관별 현장작동성 평가일정 및 대상에 대한 공지는 언제 되나요?</p>	<p>○ 평가일정은 8월 초 사전공지하며, 대상현장은 방문 10일전 공문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p>
<p><공통> ○ 귀 기관에서 실시 중인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 평가에 대해 가점 또는 면제 요청합니다. 사유인 즉, 위험성평가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기관 스스로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고자 귀 기관으로부터 우수사업장 인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장의 부서장부터 모든 근로자와 합심하여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도의 취지는 귀 기관이 더 잘 알고 있을거라 판단되므로,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 요청드립니다. (※작년 수검시 귀 기관의 평가위원은 돈만 주면 인정해 주는 제도라는, 쓸모없는 제도로 우리기관에게 설명하였으나, 우리기관은 모든 작업장의 우수사업장 인정을 위해 경주 중)</p>	<p>○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득한 사업장에 대하여 부여하며, 위험성평가의 추진체계 및 조직, 전사적 참여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며, 인정 이후 지속적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사후관리를 통해 연장 심사를 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여부와 가점 부여 여부를 떠나, 기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등의 노력이 크다면,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위험성평가 지표의 득점은 높게 나타날 것임.</p>
<p><공통> ○ 평가등급 결정 시, 서비스 집중형 그룹 내의 기관들간의 상대평가로 등급이 결정되나요?</p>	<p>○ 평가그룹은 공기업 I, 공기업 II,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기관의 5개 평가그룹과 신규 포함된 기타 공공</p>

질의	답변
<p>○ 아니면, 준정부기관 내 강소형 기관 (39개)의 그룹에서 상대평가로 등급이 결정되나요?</p>	<p>기관을 추가하여 총 6개 평가그룹 체계이며, 각 평가그룹 내에서 등급을 결정하여 통보할 예정임.</p>
<p><공통></p> <p>○ 기재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와 금번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별개의 평가 제도인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다른지, 상관관계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p>	<p>○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와 타 부처의 안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며,</p> <p>○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고용부 주관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안전활동에 대한 평가임</p> <p>○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심사시 연계·활용됨.</p>
<p><공통></p> <p>○ 안전활동 수준평가가 안전등급제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p>	<p>○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심사단에 제공되어 안전등급 심사에 활용될 예정임.</p>
<p><공통></p> <p>○ 안전활동수준평가의 현장작동성평가 8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안전등급제 9월에 시범시행한다고 통보됨. 위 두개의 평가의 주관하는 정부부처는 다르나 실제 시행하는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이므로 일정 조정이 필요함.</p>	<p>○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에서는 일부 공공기관에 한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임.</p> <p>○ 또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와 병행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음.</p>
<p><공통></p> <p>○ 세부평가내용에 따라 5등급 정성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무엇이며, 최종 평가등급은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p>	<p>○ 지표정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평가내용의 달성정도를 5단계로 평가하여 구체적 기준은 세부평가 내용 특성에 따라 다름.(편람 자구 수정)</p>

질의	답변
<p><공통></p> <p>○ 본평가와 현장작동성 평가결과의 산출 비중을 책임평가원이 일부 조정 시 구체적 조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p>	<p>○ ①현장작동성평가 시 해당항목의 평가 달성 정도, ②현장작동성평가 현장의 대표성, ③전 기관의 P-D-C-A 사이클에서 본사와 현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평가 비중을 ±10% 수준에서 조정함.</p>
<p><공통></p> <p>○ 안전보건성과의 대부분 내용은 KOSHA 18001 인증기준에 따라 사후 심사를 수검받고 있음. 그럼 KOSHA 18001을 인증받고 유지하고 있다고 관련증빙자료는 인증서로 대체하면 되지 않는지?</p>	<p>○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등에 따라 KOSHA-18001 인증 범위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평가토록 되어 있어 증빙 전체를 대체하는 것은 평가목적과 상충됨.</p> <p>다만, 사후심사에서 제공했던 증빙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평가에 일부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p>
<p><공통></p> <p>○ 2019년 평가시 결측된 지표와 올해 같은 지표가 있고, 피감기관의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경우 금년 평가 시에도 결측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p>	<p>○ 작년평가와 금년평가의 지표명이 유사 할지라도 세부평가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일적으로 작년에 결측이었으므로 금년에도 결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p>
<p><㉠안전보건경영체제></p> <p>○ 안전보건경영 방침의 수립은 최고경영자가 변경될 경우 대부분 시행하고 있음. 2019년 이전에 최고경영자가 변경된 경우 2020년초에 평가한 2019년 평가에 반영되었는데. 다시 준비하여야 하는지?(최고경영자 변경없음)</p>	<p>○ 최고경영자가 변경되지 않고 기관에서 안전보건경영방침의 합리적 변경사유가 없으면 변경할 필요가 없음.</p>
<p><㉠안전보건경영체제></p> <p>○ 최고경영자의 면담관련하여 면담기관 중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자</p>	<p>○ 최고경영자가 불가피하게 면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소명자료는</p>

질의	답변
<p>면담이 가능하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자료인지?(출장증명만 하면 되는지?)</p> <p>- 2019년 평가시 출장을 소명하였으나 미반영(감점조치)</p>	<p>해외출장, 주요 회의 등 기관장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으로 함.</p> <p>※ 출장 소명 건에 대해서는 감점조치 하지 않음.</p>
<p><㉠안전보건경영체제></p> <p>○ 최고경영자의 면담을 진행 관련하여, 우리 원은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 부원장님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전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p> <p>-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의 면담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기관장이 면담해야 하나요?</p>	<p>○ 최고경영자 면담에서 최고경영자란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의미함으로 최고경영자 면담 시 원장이 참여해야 함.</p> <p>단. 해외출장, 정부주재 주요 회의 등으로 인해 그 사유를 증빙하고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상위자 면담을 할 수 있음.</p>
<p><㉠안전보건경영체제></p> <p>○ 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2019.12.19. 기 게시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관련 질의 답변 사항 공유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p> <p>22번 질문(11page)</p> <p>[게시글 내 질의응답 원문]</p> <p>A-안전보건체제와 관련하여,</p> <p>-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 지침에서 안전 관리는 기관장 직속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의 여부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며, 전담조직 보유여부의 점수 비중이 가장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체제가 그 조직의 안전</p>	<p>○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 10조 2항에 따르면 안전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설치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안전관리 중점기관에서는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하며, 안전관리중점기관이 아닌 경우 기관의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p> <p>○ 안전관리중점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의 경우 안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는지 여부는 세부평가항목에서 평가를 하고 있음.</p>

질의	답변
<p>관리 수준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총무, 안전이 같은 업무가 한 조직에서 이루어지면 안전관리를 주 업무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법적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겸직하고 있는데, 안전보건체계부분에서 겸직에 대한 부분이 점수에 반영되어야 한다. <p>답변 ○ 제안하신 내용은 본 평가 지표 A-2(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수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음.(최대 100점까지 부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향후 평가지표를 지속 고도화 할 예정입니다. <p>[답변에 관한 질의사항]</p> <p>답변에 언급한 조직관련 평가는 '평가 지표 A-2 안전관리조직(기관장 직속 전담조직 설치 및 임원급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여부)'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에만 해당됩니다.</p> <p>안전관리 중점기관의 경우 부처차원에서 이미 많은 지적과 관리를 시행하였기에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및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p> <p>시설안전실, 총무실, 안전시설실 등</p>	

질의	답변
<p>여타 다른 행정부서와 합쳐서 과/실 중 하나로 편성되어 타업무와 함께 겸직하게 하는 기관은 거의 다 非안전관리 중점기관입니다.</p> <p>기관장 직속 전담조직을 모든 기관 공통으로 설치하도록 평가지표 수정 필요합니다.</p> <p>기 질의된 '시설, 총무, 안전이 같은 업무가 한 조직에서 이루어지면 안전관리 추진 어려움' 전담조직 보유여부, 겸직'에 관하여는 평가항목 A-2 (1. 직제 상 안전관리조직의 구성과 권한무여,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이 항목 하나로 모두 합쳐져있습니다.</p> <p>안전관리를 강화하려면 인원충원 및 전담인원 채용, 전담조직 구성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p> <p>기관장 직속 전담조직을 모든 기관 공통으로 설치할 수 있게하고, 전담업무 위반(안전관리자가 소방업무, 행안부의 재난업무(비상안전기획관실 업무)-안전한국훈련, 국가안전대진단 수행)을 강력하게 평가해야 합니다.</p> <p>비상안전기획관실의 재난업무를 겸업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전담업무 위반입니다. 해당사항은 소규모(정규직 300~1000명) 공공기관 공통사항일거라 생각합니다.</p> <p>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p>	

질의	답변
<p>법률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의 전담/겸임 여부도 평가해야합니다. 근로자 300명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관리업무만 전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해당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p> <p>업무를 하기위한 환경조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p> <p>평가지표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p>	
<p><㉠안전보건경영체제></p> <p>○ 안전관리중점기관은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해야하는데, 안전관리중점기관이 아니지만 해당 사항을 추진을 하면 해당지표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가산점 등)</p>	<p>○ 안전관리중점기관이 아닌 경우,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은 평가항목에서 '해당 없음'으로 처리함.</p> <p>※ 다만,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 가능함.</p>
<p><㉠안전보건경영체제></p> <p>○ 우리 원은 안전경영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따로 운영해야 하나요?</p>	<p>○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7항에 의거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수가 법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적 운영 대상에 포함됨.</p>
<p><㉠안전보건경영체제></p> <p>○ 직제상 안전관리조직의 구성과 권한 부여 등의 적정성에서</p>	<p>○ A.2.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의 적정성 판단기준은</p>

질의	답변
<p>①구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②권한부여는 어떤 권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③ 적정성의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p> <p>①~③의 세부평가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1절, 안전보건 관리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과 안전관련 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해당 법령 등에 따른 업무와 직무에 따라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자(조직)에게 부여되어야 할 지휘, 통제, 검토 등을 의미함. - 적정성 판단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관련 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함.
<p><㉠안전보건경영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실적 정리를 위한 '안전관리 세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공사와 같이 공공기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 반영을 통해 체계적인 예산관리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담당부서에 요청하였으나 주무부처(기재부)에서 세목반영 불가함으로 통보 받음 ○ 안전예산을 경상비, 용역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되어 예산의 반영 및 실적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예산 세목은 기획재정부에서 시달한 '20년도 안전기본계획 작성에 포함된 안전예산 분류기준(p22)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므로 기관은 기획재정부 안전예산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함. - 다만, 기재부의 예산 정책에 따라 기관 내에서 자율권을 갖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 예정임.
<p><㉠안전보건경영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기관의 예산관리는 안전전담부서가 아닌 예산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기관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꼭 안전예산만을 염두해 두고 사업을 편성하기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예산 항목은 기획재정부에서 시달한 20년도 안전기본계획 작성에 포함된 안전예산 분류기준(p22)에 따라 평가할 계획임.

질의	답변
<p>어려운 실정이며, 기관의 예산 집행은 직간접요소로서 안전예산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p> <p>그러므로, 예산 항목을 정확하게 매칭하기 어려우며, 또한 기관별 사용하는 예산항목 이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평가를 요청드립니다.</p> <p>○ ②분기별집행계획 및 내역등에 대한 준비사항은 꼭 분기단위가 아니어도 기관의 내규에 따라 정기적인 예산집행분석에 대한 실적이 평가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p>	<p>○ 질의하신 예산항목 명칭 차이 등은 충분히 인정되는 사유이며, 이를 고려하여 평가 예정임. 또한, 예산 집행계획 및 내역 등의 분기단위 관리는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서, 기관의 내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예산의 집행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함.</p>
<p><A안전보건경영체제></p> <p>○ 평가착안사항에 ①안전 소요예산 조사·분석 등에 따른 합리적인 편성 노력을 평가하겠다고 되어 있음. 발전사의 안전예산은 기획재정부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안전예산 보다는 설비정비·개선 등의 예산이 모두 포함된 예산이므로 과연 안전예산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가능한지?</p>	<p>○ 합리적인 편성 노력은 기관의 사망 등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업소 등의 소요예산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평가함.</p>
<p><A안전보건경영체제></p> <p>○ '20년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p>	<p>○ 「A.2.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과 관련하여 인증 획득 범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정으로 평가 계획임.</p> <p>※ 다만, 인증 획득과정(컨설팅 또는 인증 신청 상태 등)에 있는 경우 차등점수 부여</p> <p>- 서비스집중형(기간산업형 중 산하기관</p>

질의	답변
	<p>이 없이 본사만 있는 경우를 포함)</p> <p>① 기관 주(고유)업무에 대하여 본사 인증을 획득</p> <p>- 기간산업형</p> <p>① 기관의 주(고유)업무에 대하여 본사 및 지사*에 대하여 개별 인증 획득</p> <p>* '20년도에 인증건수 1개소 이상 증가하거나 '19년도까지 모든 지사 인증 획득</p> <p>② 기관의 주(고유)업무에 대하여 본사에서 지사를 포함한 일괄 인증 획득</p> <p>※ 상기 결과에 인증의 실행 수준을 추가 고려하여 1단계 이상 상·하향 조정</p>
<p><①안전보건경영체제></p> <p>○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기관의 사규로써, 그 대상은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제도 반영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규의 범주를 벗어나는 대상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협력업체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규정의 직접적인 반영은 평가항목에 제외 요청드립니다.</p>	<p>○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1, 총칙</p> <p>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p> <p>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p> <p><u>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u></p> </div> <p>※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안전관리규정) 설명자료 참조</p>

질의	답변
<p><㉠안전보건경영체제></p> <p>○ 안전보건방침은 안전보건경영방침 인지?</p>	<p>○ 안전보건방침은 안전보건경영방침으로 판단 가능함.</p>
<p><㉠안전보건경영체제></p> <p>○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는데,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최고경영자의 의지보다는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의지 높으므로 이런 내용 변경이 필요함. 그리고 A.1의 최고경영자의 리더십부분과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임.</p>	<p>○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구축 시 안전보건방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로 평가를 실시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의지 표현 2.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행 및 지속적인 개선의지 3. 조직의 규모와 여건에 적합 4.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 의지 5.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
<p><㉠안전보건경영체제></p> <p>○ 금년 상반기 한정된 예산, 인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활동에 집중하여 기존 안전기본계획 상 일부 계획의 추진 지연, 추진불가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기본계획 이행수준 평가 시 이에 대한 감안이 있었으면 합니다.</p>	<p>○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로 인해 안전기본계획 상의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반영하여 평가할 예정임.</p>
<p><㉡안전보건관리></p> <p>① 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을 준용하여, 배치전 건강검진 일부 유예 등을 적극 반영 요청합니다.</p>	<p>○ ①의 건강진단 실시 유예에 관한 사항은 평가에 반영 함.</p>

질의	답변
<p>②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은 개별 사무소마다 계획 수립은 불가능하며, 본사에서 전사 차원의 계획 수립 및 모든 작업장에서 이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 바, 개별 사무소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는 지양하고 이행여부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본사의 계획 사항과 연계하여, 활동 사항을 같이 평가함.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추어 평가 됨)</p>
<p><㉞안전보건관리></p> <p>1) 독감, 동·식물 등의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 수준의 경우 근로자 대상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내려오는 일반적인 공지·안내 사항 외 기관 차원에서 차별성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p> <p>2) 코로나19 예방조치 수준 관련,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 보급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언론의 '공공기관 마스크 사재기' 논란 및 지속적인 국회위원 요구자료(개인 위생용품 보유수량) 등의 외부요건 들로 인하여 실질적인 근로자 감염증 예방을 위한 조치(마스크 제공 등)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가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p>	<p>○ 중앙방역대책본부 시달 대책 이행부분을 참조토록 하겠음.</p> <p>○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현상 등을 참조토록 하겠으며, 보호구 보유확보 여부만을 평가하지 않음.</p>
<p><㉞안전보건관리></p> <p>○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는 대부분 외부 안전전문가, 관리감독자 등이 교육 수행하고 있음. 강사의 전문성이란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p>	<p>○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적요건과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련 교육의 자체 강사 기준을 토대로 평가 됨.</p>

질의	답변
<p><㉞안전보건관리></p> <p>○ 임차건물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p> <p>(예) 1. 전체 임차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2. 1개 층을 임차하여 근무하는 경우 경우 3. 자가건물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전부 임대를 준 경우)</p>	<p>○ 소속 근로자의 사고부상, 질병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범주를 말하며, 임차 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작업 범주, 전부 임대를 주어 소속 근로자가 없는 경우 자가건물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됨.(자가 건물의 위험요인에 따른 타 소속 근로자의 위험 방지 등 조치를 위함)</p>
<p><㉞안전보건관리></p> <p>○ 관리자 및 근로자 면담 시 내부적으로 선정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실시여부</p>	<p>○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및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 단위 직무 또는 업무의 ‘부서의 장’ 급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단위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p> <p>※ 평가위원이 별도 지명 예정</p> <p>※ 근로자 대표는 필요시 면담</p>
<p><㉞안전보건관리></p> <p>○ 본사의 경우 관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사업소의 경우 부서장은 사업소장을 의미하는지? 올해는 노동조합 면담은 없는지? 직·반장은 협력업체 반장을 의미하는지?</p> <p>○ 근로자는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지? 협력업체 근로자도 포함이 되는지? 협력업체 근로자가 포함된다면 그 범위는?(청소, 경비, 식당용역 등의 근로자도 포함되는지?)</p>	<p>○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및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 단위 직무 또는 업무의 ‘부서의 장’ 급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단위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p> <p>※ 근로자 대표는 필요시 면담</p> <p>○ 근로자는 임원, 관리감독자 및 그에 준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임. 다만, 협력업체(수급 등)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을 ‘수급업체 안전보건</p>

질의	답변
	교육 등 인프라 지원’ 지표에서 평가하며, 부수적·보조적 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도 포함하여 평가함.
<p><㉞안전보건관리></p> <p>○ 기타사항으로 근로자 면담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어느 직급의 근로자를 몇 명을 면담하는지 명확히 필요하며, 그리고 일부만 면담을 통해 인식 및 참여수준 파악이 가능한지 의문. (주관적 입장이 많이 개입)</p>	<p>○ 근로자 대상의 범주는 임원, 관리감독자 및 그에 준하는 사람을 제외한 직원으로 면담은 2인 이상 실시하며, 평가의 형평성 및 면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임.</p>
<p><㉞안전보건관리></p> <p>○ 해당 평가항목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행안부 비상안전기획관?)의 업무가 대부분인데요,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유무에 대한 것도 평가에 포함되나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비상안전기획업무담당자)</p>	<p>○ 서비스집중형 B.5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기간산업형 B.5 비상시 대비 및 대응)와 관련 사항 중에 질의에 관한 사항이 일부로서 평가에 포함됨.</p>
<p><㉞안전보건관리></p> <p>○ 지난 해 한 평가위원이 ‘산업재해 예방 계획’이 없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무엇이 들어가는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내용이 ‘안전기본계획’의 내용과 일정부분 일치합니다. (교육,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등...)</p> <p>○ ‘안전기본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해야하나요?</p> <p>*참고로, 산업재해건이 발생한 건은 사고조사 및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보고하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p>	<p>○ ‘19년 평가 내용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은 비상조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중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내용임.</p>

질의	답변
<p><㉞안전보건관리></p> <p>○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 및 비상 시나리오 관련, 코로나사태로 민방위의날 훈련도 모두 취소된 지금, 연간 교육, 훈련의 횟수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준비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p>	<p>○ 관련 지침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관련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가 편람 원안으로 추진함. 다만, COVID-19 지속에 따라 교육, 훈련이 불가피 축소되거나 일부 진행되지 못한 사항은 객관적 자료 확인을 바탕으로 판단 예정.</p>
<p><㉞안전보건관리></p> <p>○ 대국민 이용시설 보유현황 자료만 요청하였음. 그럼 보유현황만 제출하면되는지? 아니면 대국민 이용시설에 대한 비상시 대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필요</p>	<p>○ '20년 평가 편람에서 준비사항을 ①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매뉴얼, 사고시나리오, 비상조치계획), ② 비상시 대비대응 교육훈련 계획 및 실행결과, ③ 비상시 대비대응 시설·장비 관리 지침 및 보유목록, 점검내역, 변경관리 내역, ④ 대국민 이용시설 보유현황, ⑤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준비사항을 제시하였음.</p>
<p><㉞안전보건관리></p> <p>○ 아차사고 사례 발굴은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 또는 운영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명확한 점검기준 및 준비사항을 주는 것이 필요</p>	<p>○ '20년 평가 편람 중 B.6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지표 중, 세부평가내용, 평가 착안사항, 준비 사항을 참조바람.</p>
<p><㉞안전보건관리></p> <p>○ 안전관리에 포함되어야 할 도급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예)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사업이 해당되는 것인지?(연구용역 포함), 상주인력이 있는 사업만 해당하는 것인지?</p>	<p>○ 국내 안전법령과 관련 해석의 내용은 법제처와 법령 소관 정부부처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자료에 기반하여 평가에 적용할 계획이므로, 공공기관에서는 관계법령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검토를 실시하고, 내부규정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p>

질의	답변
<p>○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를 직접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시여부 확인, 인프라 지원 등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p>	<p>○ 도급사업 및 발주공사에 관련 사항은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과 고용노동부의 해석(「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사업 재해예방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판단하시기 바람.</p>
<p><㉔안전보건관리></p> <p>○ 1) 도급사업 수급업체의 대상범위는?</p> <p>1-1. 도급인이 제공 또는 관리하는 공간(작업장)이 아닌, 각 수급업체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수행하여 성과(품)만 도급인에 제공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는가?</p> <p>- Ex. 차량임차(렌터카), 인쇄·복사 단가계약, 연구용역 등</p> <p>1-2. 부수적이나 보조적인 사업을 도급을 준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는가?</p> <p>※ [참고] 2019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람(2019.11.29) 57p - '도급절차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지표의 <기타사항> 中</p> <p>- 도급(용역, 위탁 포함) 중 부수적이나 보조적인 사업*을 도급을 준 경우에는 당해 도급사업은 본 지표에 한하여 '해당 무' 처리</p> <p>* 부수적·보조적 사업 : 경비, 단순청소, 조경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 운행, 구내식당 위탁 등</p> <p>○ 2) 해당이 된다면 '도급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 검토,자문 및 입찰시 제공 등에 관한 규정,서류'도 모든 대상에 대하여 준비하여야 하는가?</p>	<p>○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의 정의」는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 계약뿐만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때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경우에도 적용됨.</p> <p>○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사업장」의 개념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p> <p>*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 참조</p> <p>○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책임범위」는 상기의 개념이 적용되며, 이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추가적인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 사업장 밖인 경우에도 다음의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이 부과됨</p> <p>①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p> </div>

질의	답변
<p><㉞안전보건관리></p> <p>○ 2019년 평가시 배포한 편람의 C-3의 1,2 지표 평가착안 사항에 도급(용역, 위탁포함) 중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을 도급을 준 경우에는 당해 도급사업은 본 지표에 한하여 해당무처리 한다고 되어있고, 부수적 보조적 사업을 경비, 단순청소, 조정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 운행, 구내식당 위탁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p> <p>하지만 2020년 편람에는 위의 내용이 빠져있어 올해 평가에는 경비, 단순청소, 구내식당 위탁 등 모든 도급이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p> <p>②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여기서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p> <p>③해당 장소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p> </div> <p>○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 밖의 제3자 소유의 작업장소(예시: 에어컨 또는 인터넷 설치 및 수리작업 등)나 수급인 소유 시설의 경우 도급인의 지배·관리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도급인의 책임 범위로 보기 어려움.</p> <p>○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인의 역할 요구 수준은 교육과 같이 수급인이 실시여부의 확인 수준 사항이 있는 반면에, 직접 조치할 사항도 있으므로, 해당 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람.</p>
<p><㉞안전보건관리></p> <p>○ ① 도급의 이해에 있어, 우선적으로 도급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의를 요청합니다. 도급의 정의에 있어 업무를 위탁한다라는 포괄적, 광의적 의미를 적용하여 확대해석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규모 및 전문공사 등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의 지위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도급의 정의가 명확하여야 그에 해당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지휘 통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p>	<p>○ 도급의 정의는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p> <p>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고, 건설공사 발주자에 규정된 책임(제5장 제3절: 제67조~제72조 참조)을 부담함.</p> <p>다만,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자기공사자) 도급인 책임을 짐.</p>

질의	답변
<p>〈B안전보건관리〉</p> <p>② 법 제61조의 안전수준평가의 대상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9.07.30, 고용노동부)의 21페이지를 참고하면, 도급사업의 검토는 도급인가 대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로 이어지는 체계로, 유해물질의 도급하는 경우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나, 현재 수준평가는 모든 도급의 경우, 안전수준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니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p> <p>③ 법 제58조에서 법 제61조는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유해한 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 대책이며, 법 제62조에서 제66조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적용 대상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B.7.2.평가 항목은 대상 구분없이 혼영하여 평가함에 따라 혼선을 야기하므로, 법령의 취지에 맞는 대상을 구분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정리하면, 귀 기관에서는 도급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급계약시 안전수준평가를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개정 되</p>	<p>○ 제58조~제60조의 사항과 제61조의 사항은 연계성이 없음.</p> <p>○ 제58조~제60조의 적용대상은 특정 허가대상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 반면, 제61조~제66조는 도급업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음.</p> <p>따라서 도급사업은 내용에 따라 상기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거나, 일부 조항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p> <p>○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업체선정 계약 건은 그 업체의 적격성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계약요건을 반영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적격업체 선정 평가지표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임.</p> <p>아울러, 위험성평가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 계약 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점검의 근거 마련이 불가능하여, 업체선정 이후 단계인 과업 지시서 상에 점검 사항을 반영하는 점은 지표의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함.</p>

질의	답변
<p>는 등을 통해 입찰부터 계약까지 안전 수준평가 요소를 정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계약의 근간이 되는 것은 국가계약법으로 국가 계약법의 선행없이 불공정거래, 또는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행정절차에 대해 선행해 주길 바랍니다.</p> <p>○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조달청을 통한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선정시에 업체를 평가하는 과정까지 완료되고,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업체에 대한 안전수준평가를 도급인측에서 개입하여 할 수 있는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며(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통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을 준수해야 하다 보니 계약서 상에 위험성 평가 등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넣을수도 없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은 도급인을 평가하는 사항은 조달청에 따르고, 대신 과업지시서 상에 위험성 평가 검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안전사항을 기재하여왔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지표 충족에 무방한지 궁금합니다.</p> <p>(해당 사항에 질의한 관련 질의회신 자료 첨부합니다)</p>	

질의	답변
<p>○ 도급에 대한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반영되어 있음. 하지만 공기업의 공사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현재의 산안법 제61조가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그런데 평가기준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있음. 법개정이 우선이 필요한 상태임(지표에서 삭제 또는 운영계획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한지?)</p>	
<p><㉞안전보건관리></p> <p>○ 평가착안사항의 2.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 등의 설치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 수준 어느 수준까지 협조해야 적정한지 모호합니다. (화장실, 샤워장, 휴게실 등)</p>	<p>○ 위생시설의 지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작업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석면, 금지유해물질, 방사성 물질, 분진작업 등의 취급작업</p>
<p><㉟안전보건활동></p> <p>○ 모회사인 한국OO공사 사업장내에 임차 건물로 단독 또는 병행하여 한국OO공사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p> <p>① 단독 임차건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C-1 작업장> 지표가 적용되는지 여부</p> <p>② 같은 건물중 특정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C-1 작업장> 지표가 적용되는지 여부</p> <p>③ 임차건물중 작업공간인 <공작동>에 대한 <C-1 작업장> 지표가 적용되는지 여부</p>	<p>○ ①~③모두 C.1 안전보건활동의 평가 지표의 적용을 받음.</p> <p>단, 평가지표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비해당’ 처리됨.</p>

질의	답변
<p>※ 같은 공간에 한국OO 사업장과 한국 OO공사 사업장이 있으므로 현장작동성 평가시 점검 사업장에 대한 구분 필요</p> <p>※ 답변시 기관명은 OO 처리 부탁드립니다.</p>	
<p><◎안전보건활동></p> <p>○ 평가 착안사항에서 작업장 적정조도 확보 부분은 어떤 기준인지 명확한 평가 기준 필요</p> <p>- 전년 평가시 평가위원이 적정조도관리 기준을 수립하였는지를 문의하였으나 통상 작업장은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조도기준을 충족하도록 조명등기구를 설치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적정 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p> <p>- 하지만, 별도의 관리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데 수립해야 한다면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문의</p>	<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채광 및 조명), 제8조(조도), 제21조 (통로의 조명), 제49조(조명의 유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 또한, 작업장소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측정 및 확인 사항에 대한 기록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됨.</p>
<p><◎안전보건활동></p> <p>○ 작업장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관리에 본사 사옥의 사무실 통로, 정리정돈 및 출입문도 포함이 되고, 평가에 반영되는지? (반영된다면, 신사옥과 30년이상 사옥은 사무공간 등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보정이 필요함)</p>	<p>○ 평가에 반영됨. 사옥의 준공 년 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노후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시설을 유지·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p>

질의	답변
<p><◎안전보건활동></p> <p>○ 작업장 및 건설공사 발주현장 평가 시 적용지표 확인요망</p> <p>- 작업장평가 : B지표, C-1지표</p> <p>- 건설현장평가 : C-2지표</p>	<p>○ 건설발주현장에 대한 평가는 C-2지표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작업장 평가의 경우에 B, C-1지표를 평가하게 됨.</p>
<p><◎안전보건활동></p> <p>○ 저희 공단은 건설공사현장이 부산00병원, 광주00병원, 대전00병원 3곳으로, 광주00병원, 대전00병원은 코로나19 감염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장작동성 평가 대상과 일정이 언제 확정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p>	<p>○ 평가일정은 8월 초 사전공지하며, 대상현장은 방문 10일전 공문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p>
<p><◎안전보건활동></p> <p>○ 평가착안사항 ①발주자의 중점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사전 발굴 수준에 건설 분야 안전보건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음. ①그럼 안전보건전문가의 수준은 어디까지 인지? 그리고 도급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2월 발표되었으나 아직도 혼선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 ②건설공사와 도급의 구분은 총괄관리하는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 도급이 아닌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③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건물 신축 건설공사도 총괄관리하지 않으면 건설공사인지? 등 명확한 안내가 필요</p>	<p>○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는</p> <p>가. 「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이상 재직한 사람.</p> <p>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취득후 건설안전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p>

질의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공사는 보통 발주자의 관리 부서에 의해 작업이 관리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이며, 해당 건설공사가 발주기관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이므로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아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됨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신축'공사의 특성상 총괄관리 할 사유가 보통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총괄관리가 없다면 건설공사에 해당됨.
<p><◎안전보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관련하여 발주자는 공사발주만 하고 설계를 설계회사에 대행하는 경우도 발주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설계사에 제공해야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작성하는 것이며,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만들도록 하여 안전이 확보된 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의무임.
<p><◎안전보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공사의 정의가 무엇인지? (예, '19.6.1일 이후 착공한 공사가 해당 되는지, 금액은 50억원 이상인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건설발주현장 평가 대상은 총 공사금액 50억이상으로서 평가 기간 중에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평가 하게 되며, '착공일' 은 평가시 결측 되는 지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적용 시킨 하나의 조건임.

질의	답변
<p><◎안전보건활동></p> <p>○ 건설공사 관련하여 발주자는 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설계사 위탁 설계) 설계 안전보건대장 이행여부는 어떻게 확인 하는지?</p>	<p>○ 설계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은 발주자의 의무 사항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 확인을 위해서는 기관 특성에 맞도록 자체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p>
<p><◎안전보건활동></p> <p>○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의 수준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결과' 항목에 있어 '사망사고 예방 특별기획점검 (PATROL)'을 하면 가점이 부여되는지?</p>	<p>○ PATROL 결과는 가점사항이 아니라 기 실시된 패트롤 결과가 평가에 반영 되는 것임.</p>
<p><◎안전보건활동></p> <p>○ 우리 원이 올해 12월에 공사금액 약 60억원의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는데, 평가항목중 C-2 건설공사 발주현장에 대해 평가를 받는지 궁금합니다.</p> <p>○ 만약 평가를 받는다면, C.2.1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C.2.2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에 대해서만 받는 건가요?</p>	<p>○ '20년도 평가에서는 건설발주분야 평가지표 결측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평가기간 중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발주기관에 대해서만 C-2분야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p>
<p><◎안전보건활동></p> <p>○ 공단은 건설공사 발주현장이 1개소만 운영중에 있으며 터파기와 기초작업 수준에 있음.</p>	<p>○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경우 C-2지표만 적용되며, B항과 C-1은 작업장을 평가 하는 경우에 적용됨.</p>

질의	답변
<p>현장작동성평가지 C-2 외에 B항과 C-1항을 건설공사 발주현장에서 점검하는지?</p> <p>다른 시설이나 영업장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하는지?</p> <p>○ 만약, 건설공사 발주현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B-1,2와 C-1-1 등에 현장에서 해당되지</p> <p>않아 평가가 어려운 사항은 추후 본평가지 본사에서 평가하는지</p> <p>○ 그렇지 않다면 본사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현장 작동성평가지 준비해야 하는지?</p>	
<p><◎안전보건활동></p> <p>○ C-2의 일부지표(C.2.1,C.2.2 등)는 공사 단계가 아닌 설계단계(본사)의 업무로, 현장작동성평가(건설현장)시 수검에 어려움이 있음.</p> <p>이 경우, 현장작동성평가(건설현장) 시 건설현장 관련지표만 준비하고 향후 본평가(본사)시 평가 받는지 여부</p> <p>그렇다면, 해당 일부지표(C.2.1,C.2.2 등)에 대한 점수처리 방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장작동성평가 결측항목 처리 2. 본평가 시 지표점수(C.2.1,C.2.2 등)를 100%반영 	<p>○ C-2 건설발주현장 평가지표 가중치 적용에 있어 현장 작동성평가는 80%를 반영하고 본평가에서 20% 가중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표가 설계되어 있음.</p> <p>○ 다만, 현장작동성 평가에서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지표는 결측처리가 될 것이며, 결측처리된 지표는 본평가지에 평가(100%반영)하게 됨.</p>

질의	답변
<p><◎안전보건활동></p> <p>○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의 공사는 현재 1건으로 공정률이 90%로서 공사 마무리 단계입니다.</p> <p>지침에 따르면, 공정률 60%이내 및 잔여 공사기간이 여유가 있는 현장이라고 명시 되어있는데</p> <p>평가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p> <p>* 기초조사표 제출일(20.6.4.) 기준, 공정률 63% 였음.</p>	<p>○ ‘20년 평가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평가함.</p> <p>○ 다만, 건설 발주 현장이 여러 개일 경우 공정률 및 공사기간 여유 등을 고려하게 되나, 건설발주 현장이 1개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p>
<p><◎안전보건활동></p> <p>○ 평가지표를 금액단위에 따라 세분화가 필요(총공사비 50억 공사와 500억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같을 수 없음, 최소 3단계(100억이하, 100억~1000억, 1000억 초과 현장)로 평가지표를 세분화 해야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거라 판단됨), 아니면 건축비용단가 상승을 고려해 볼때 총공사비 100억이상을 평가대상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p>	<p>○ 귀사의 의견에 공감하나,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발주 기관의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것임. 다만, 지표에 대한 점수 판단 기준은 공사규모에 따른 요건을 포함하고 있음.</p>
<p><◎안전보건활동></p> <p>○ 현재 발주(‘20년 10월)예정인 설계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평가가 올해 적용 되는지 여부? (‘21년 공사 착공은 미정)</p>	<p>○ ‘20년도 평가에서는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발주기관에 한하여 C-2분야를 평가함.</p>

질의	답변
<p><㉔안전보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020-22호(2020.1.15.)에 따르면 평가항목 C.2.1~3은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번 현장작동평가에 우리공사는 통합 000 센터가 건설공사 발주현장에 해당 된다는 연락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9년 초에 공사 계획을 세우고, 2019년 3월에 설계용역을 거쳐, 2019년 하반기에 업체를 선정하여 2020년 1월 20일에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위 고시에 따르면 우리공사는 계획과 설계가 2019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금번 현장작동평가 항목 C.2.1~3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1) 위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되는게 맞는지? 2) 제외된다면 배점은 어떻게 재구성 되는지? 에 대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대장과 관련된 항목은 ‘20.1.16. 이후 발주자가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음. ○ 그러나, 2019년 5월 정부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에 따라 2019년 6월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2019.6.1.이후에 설계 입찰 공고된 현장이라면, 안전보건대장과 관련된 지표를 평가하게 되고, 그 이전에 설계 입찰 공고된 경우라면 해당 지표는 결측처리 됨.
<p><㉕안전보건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사고 외에 산업재해사고 발생도 포함하여 평가가 필요하며 안전활동 수준평가 실시 배경이 태안발전소 사고 이고 수준평가 실시목적이 산업재해 감축이므로 배점을 확대(100점->200점)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사고 이외의 사고재해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할 경우 사고은폐를 조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산업 재해 보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현행 정책기조와 맞지 않으므로 금번 평가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질의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산재감축노력도를 전년도에 비하여 개별지표로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하여 충분히 확대되었음. 결과지표인 산업재해에 배점을 크게 할 경우, 재해가 다수 발생한 기관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추진의지를 상실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p><㉔안전보건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사항 1,2번에 안전문화 확산 실적 증빙 / 444안전점검의 날 실적, 기타 캠페인, 대중매체 홍보 등 주요사례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다만, 준비사항 3번에 근로자, 이해관계자, 국민에게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한 활동(1건)은 3페이지 이내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앞선 1,2번에 해당되는 실적을 제외하고 또 다른 한건을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1,2번에 제출한 실적 중 1가지를 선정하여 그걸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3번 평가지표는 1,2번과 중복되지 않는 우수사례 1가지를 선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㉔안전보건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6조(조사대상 재해 등)에 따라 조사되거나 에 대해 관련하여,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를 수반되나, 개인 지병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조사 사유가 성립되는 않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조사행위만으로만 사고사망자수를 산정하게 되면 기관에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발주, 도급업무에서의 사고사망을 포함하기 위해 개선된 사항이며, 편람에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조사된 사고사망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집무규정 제26조제 1항에 해당되어 조사된 재해만 포함함을 의미함.

질의	답변
<p>점이 있으므로, 조사결과까지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종전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된 사항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 기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p>	
<p><㉔안전보건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현장 근로자의 사망사고감소성과 평가지표에서 제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현장은 도급인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은 평가지표에서 제외(단, 공공기관 소속기관의 직원의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발주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평가대상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 노동계를 포함한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 공공기관 수준평가의 목표가 사망사고 감소라는 점을 생각할 때 발주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평가의 취지에 부합함.